

## 경륜·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인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1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8. 26.

발의자 : 박인숙 · 김성원 · 김학용  
김선동 · 지상욱 · 윤재옥  
김한표 · 정진석 · 추경호  
민경욱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,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, 경주 사업자는 경주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고 이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경주사업자가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마련하는 조치에 정작 그 수혜의 대상인 선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(경주사업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는 심판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름),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선수육성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 현행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에 따라 국민

체육진흥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주사업자에게 선수를 주선하고 있는데 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선수협회에서 주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현재 경주사업자가 실시하고 있는 승자투표권 교차발매와 관련하여 그 수익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경주사업자가 선수 등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 선수협회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, 경주사업자가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 또한 선수를 주선하는 권한을 관리주체인 공단이 아닌 실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돌려주고 승자투표권의 교차발매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7조의3 및 제9조제3항·제4항 신설 등).

## 경륜·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륜·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3(선수협회 및 선수의 주선 등)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들로 구성된 선수협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선수협회에 선수의 주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수협회는 요청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.

④ 선수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선수의 주선을 요청받은 경우 주선과 관련하여 진흥공단과 경주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선수의 주선의 절차, 기준, 수수료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”을 “발매방법, 장외매장의 시설기준, 승자투표권 교차발매 및 교차발매 수익금의 배분”으로 한다.

③ 경주사업자는 다른 경주사업자의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교차

하여 발매할 수 있다.

④ 경주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승자투표권 교차 발매를 실시하는 경우, 그 수익금을 해당 경기에 출전한 선수와 배분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“선수육성을”을 “선수육성 및 선수의 복지와 안전을”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“(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)”을 “(선수 등의 복지)”로 하 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선수나 심판, 그 밖에”를 “선수나 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선수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제7조의3(선수협회 및 선수의 주선 등)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들로 구성된 선수협회를 둔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</p> <p>③ 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선수협회에 선수의 주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수협회는 요청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.</p> <p>④ 선수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선수의 주선을 요청받은 경우 주선과 관련하여 진흥공단과 경주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p> <p>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선수의 주선의 절차, 기준,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제9조(승자투표권의 발매) ① · ②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	<p>제9조(승자투표권의 발매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경주사업자는 다른 경주사</p>



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  
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 
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 
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 
하고,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 
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 
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 
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 
사용하여야 한다.

## 2. (생 략)

### ② · ③ (생 략)

제22조(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)

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  
하는 선수나 심판, 그 밖에 경  
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  
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 
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### ② (생 략)

선수육성 및 선수의 복지와  
안전을

## 2. (현행과 같음)

###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선수 등의 복지) ① -----

-----  
-----선수나 그 밖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 이 경우 경주  
사업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 
선수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야  
한다.

### ② (현행과 같음)